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86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이용우·김태선·정혜경

박홍배·조 국·임미애

이학영 · 서영교 · 김선민

신장식・박 정・황정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

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프리 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 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 6조 및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녀의 성(性)을"을 "성별·연령·신체조건을"로,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국적·인종·신앙·사회적 신분(고용형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 ④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보아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행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 제6조(균등한 처우) -----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성별・연령・신체조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건-----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 국적·인종·신앙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ㆍ사회적 신분(고용형태를 포함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한다) -----<신 설> 제6조의2(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 금)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 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 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근로자대 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 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 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 장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 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도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보

 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